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시정 요구

제 목 ○○○○○○○○○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훈계대상자 ① 울산광역시 남구(휴직) 지방○○○○○○○○ ○○○
(전 ○○○○단)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과 지방○○○○○○○○ ○○○
(전 ○○○○○○○○○)

내 용

지방○○○○○○○○ ○○○은 2014. 12월부터 2017. 2월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단에서, 지방○○○○○○○○ ○○○은 2014. 12월부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과에서 제○○회 ○○○○○○○○○ ○○대회 보조금사업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제10회 ○○○○○○○○○ ○○대회는 2015. 10. 13.부터 10. 15.까지 3일간 개최되었으며, 울산광역시 본청(○○○○과¹⁾), 남구(○○○○단), 동구(○○○○과), 북구(○○○과), 울주군(○○○과)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인 ○○○○○○○○○○○○○○○○○○○회에 8억원(국비 1.4억, 시비 4억, 구군비 2억, 자부담 0.6억)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 現 해양수산과

(예규 제9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제27호)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고,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에도 여성기업 혹은 장애인 기업 등 1인 견적 제출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제출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시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행사(축제) 경비 집행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도록 명시를 하고 보조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 집행을 할 시 법령에 따라 일반입찰을 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당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했다.

1. 행사 경비 집행 시 지방계약법령 위반하여 계약 체결

울산광역시(○○○○과), 남구(○○○○단), 동구(○○○○○○과), 북구(○○○○과), 울주군(○○○과)에서는 제○○회 ○○○○○○○○○ ○○대회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교부조건으로 행사 경비 집행 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할 것을 명시했어야 하나, 아래 [표1]과 같이 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

거나 혹은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어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1] 제○○회 ○○○○○○○○○ ○○대회 보조금 교부 조건

구 분	보조금	행사(축제) 경비 집행시 지방계약법령 적용 명시 여부
울산시	400백만원	7. 보조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남구	50백만원	명시 안함
동구	25백만원	10.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북구	25백만원	명시 안함
울주군	100백만원	명시 안함

그 결과 보조사업자가 행사 경비를 집행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2] 제○○회 ○○○○○○○○○ ○○대회 계약체결 위반사항(2천만원 이상)

계약내용	금 액 (천원)	계약방법	계약처	위반사항	관련 관서
행사 구성 전반 총괄 기획 및 시설 설치·운영·관리 대행	180,000	공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고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하지 않음	울산시
영상불꽃쇼, led애드벌룬, 유등 등 연출 및 설치	112,000	수의계약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나 수의계약 체결	울산시, 남구, 동구, 울주군
기념패 제작 및 기념타월 공급	28,865	수의계약	○○○○	소상공인으로 수의계약 가능하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을 받지 않음	울산시, 북구
모자, 단체복(바람막이) 공급	45,300	수의계약	○○ ○○○○	소상공인으로 수의계약 가능하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을 받지 않음	울산시
수상부교 설치 및 운영	88,000	수의계약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나 수의계약 체결	남구, 울주군
행사 게시물 설치	38,200	수의계약	○○○○○	소상공인으로 수의계약 가능하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을 받지 않음	울산시

또한 위 관서들은 이러한 위반사항이 있었음에도 정산 검사 시 아무런 지적 없이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승인하였다.

2. 수상부교 설치 및 운영 계약 관련 지도·감독 및 정산 소홀

울산광역시 남구(○○○○단)와 울산광역시 울주군(○○○과)에서는 ○○○○○○○○○○○회에 각각 5천만원과 1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보조사업자는 행사에서 사용할 수상부교의 설치 및 운영을 ○○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남구와 울주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중 88백만원을 ○○에 지급하였다.

하지만 해당 계약 금액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용역’으로 볼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또는 ‘그밖의 공사’로 보더라도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게다가 수상부교 설치 및 운영 업체로 선정된 ○○(대표자 ○○○)은 한 번도 수상부교를 설치한 실적이 없는 업체였고, ○○은 아래 [표3]과 같이 수상부교 설치, 경비 및 안전요원 용역, 조명 및 발전기 설치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각각의 공사·용역을 모두 타 업체로 외주를 주었다.

그 결과 ○○은 88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외주업체에 65백만원을 지급하여 23백만원의 차익이 발생하였다.

[표3] 부교 설치 및 운영 집행 내역

보조사업자와 ○○ 계약 내역		○○에서 외주를 준 내역	
총액	88,000,000원	총액	65,000,000원
부교 설치	66,297,000원	부교 설치(○○○○○○○)	45,000,000원
조명설치	6,303,000원	조명설치(○○○○○)	5,000,000원
경비 및 안전요원	15,400,000원	경비 및 전요원(○○○○○)	15,000,000

따라서 직접 계약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었다면 절감할 수 있었던 예산이 해당 실무담당자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 보조사업자가 직접수행할 수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낭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합동감사 중 ○○이 외주를 준 내역에 대해 세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보조사업자는 ○○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밝히며 외주를 준 금액만을 ○○으로부터 받아 적어 제출하였는 바, ○○이 외주업체에 준 금액이 실제 65백만원이었는지도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지 못한 상태이다.

위 관서들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부교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으로 보조금이 지출된 내역만 있을 뿐, ○○이 실제 집행한 내역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보완 요구를 통해 추가 자료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해당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도 없이 정상 집행되었다고 정산 검사를 하는 등 결과적으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울주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 남구청장, 동구청장, 북구청장, 울주군수는

[시정] 위 사업에 대하여 다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해 사안별로 보조금 환수, 보조사업자 제재, 수사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